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

공 사 설 명 서



〈본 현장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가 됩니다〉

2020. 09.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 시설과)

공사설명서

※ 본 공사 설명서는 계약서의 일부입니다.

**노후화된 제1공학관의 교육공간을 개선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으로
급변하는 교육여건에 대비하고자 미래융합관 건립공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1. 공사명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2. 공사목적 : 노후화된 제1공학관을 철거하고 공학계열의 교육공간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사 시행을 추진하고자 함.
3.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시립대로 163 (전농동), 서울시립대학교 내.
4. 공사개요 :
 - 1) 공사명 :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 기계설비공사
 - 2) 공사규모 :

구 분	면 적(m^2)	용 도
지하2층	3,508.03	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공동기기실 등
지하1층	2,345.32	강의실, 실험실, 중앙감시실 등
1 층	1,210.89	실험실, 행정실, 학생회실 등
2 층	1,180.21	교수연구실, 일반/밀폐실험실 등
3 층	1,180.21	교수연구실, 일반/밀폐실험실 등
4 층	1,180.21	교수연구실, 일반/밀폐실험실 등
5 층	1,180.21	교수연구실, 일반/밀폐실험실 등
옥 탑 층	80.25	동물실험실
합 계	11,865.33	

- 3)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구조
- 4) 주 용 도 : 교육연구시설
- 5) 도 급 액 : 3,707,072,000원(금삼십칠억칠백칠만이천원)
 - ※ 관급자재비 제외된 금액이며 서울시 계약심사 완료 금액임.
 - ※ 도급자설치 관급 : 33,900,000원(펌프류)
 - 관급자설치 관급 : 1,462,444,000원(냉난방기, 공기순환기, 보일러 등)/
관급자재비는 실 구매 시 변경가능
- 6)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

〈주 의〉

- ※ 아래에 기재 되어있는 당해 공사의 특수 및 일반 사항을 숙지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학사일정 및 입주할 교직원의 일정이 정해진 상태로 공기연기나 지연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유념하여 입찰하시기 바랍니다.

5. 본 공사의 특수사항

- 1) 서울시립대학교 미래융합관 건립공사는 교내 건설분과위원회 자문(심의) 등을 받은 사업으로써 공사 중 학교 내 관련 학과 교수(건축계획, 디자인, 구조, 시공 등)들의 의견 및 시설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지속적인 의견이 있을 시 이를 발주자과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미래융합관 건립공사의 취지는 우리대학에서 역점 추진하고 있는 교육공간 개선과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본교 학생 및 인접 휘경초등학교의 학습권 보호와 교직원 근무환경에 불편이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2023년 학사 일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2022년 9월까지 완료되어야 한다」에 각별히 유념하여 입찰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3) 당해 공사는 원 설계자가 감리를 할 수 있으며, 공사 부위별 상세, 설계의도 책상, 형태 등 설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4)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한다”에 있어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근로기준법 등과 안전 관련, 환경관련 및 타 공사 관련 제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 5) 본 공사는 설계도서 및 국토교통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서울시 전문시방서에 의하여 시행한다.
- 6)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의 내용이 건설관련법령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 중에 건설관련법령이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건설관련법령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관계 법규 및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참고 할 수 있는 관련법규의 사례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기술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건축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공산품품질관리법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근로기준법 • 대기환경보전법 • 도로교통법 • 도로법 • 문화재보호법 • 산림법 •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표준화법 • 토양환경보전법 • 소방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음진동규제법 • 수질환경보전법 • 승강기제조및관리에관한법률 • 시설물의안전에관한특별법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 자연환경보전법 • 전기공사업법 • 정보통신공사업법 •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 폐기물관리법 •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 하천법 • 대기환경보존법 •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 수도법 • 하수도법
--	--

- 7) 설계도서, 시방서 및 제반법규 사항 등이 서로 상이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르며, 이에 따른 물량증감은 추후 정산한다.
- 8)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서의 내용이 현장 여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설계서의 누락, 오류, 구조적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9) 시공 상 필요한 관계부서 수속, 허가, 기타 관련업무 등은 수요기관을 대행하여 필 하고,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결정한다.
- 10) 수급인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착공하여야 하며, 계약 후 발주기관에 착공계를 제출하고 착공계 제출 시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11) 수급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현장대리인, 공사감독자 등으로 구성된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 1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안전관리비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며, 사용하지 아니 한 비용은 공사 준공 시 정산처리를 한다.
- 13) 현장대리인은 공사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등 담당공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사계약문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 14)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중단 할 경우에도 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현장상주 근무요원으로 하여금 현장근무에 임하도록 하고, 현장대리인은 근무요원의 편성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통보하도록 한다.
- 15) 현장대리인은 공사기간 중 작업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부득이 작업현장을 이탈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16) 수급자는 발주기관에 하도급신고통지 시 보증기관에서 발급하는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 17) 수급인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 기능, 현장마무리 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되는 약간의 수량 증감 및 경미한 변경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변경 시공하여야 하며, 착오에 의해 물량이 과다 또는 과소 반영되었을 경우 추후 설계변경 및 정산처리 한다.
- 18) 기존 시설은 최대한 훼손되지 않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승인에 의하며, 공공시설물의 손괴에 대하여 원상복구 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체의 비용은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19) 공사로 인한 학교 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로 일부(일방통행로)를 임시 확장하여 사용하는 바, 이로 인한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와 기존도로 손상원인이 공사차량에게 있을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손상 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 20) 본 공사 구역에 인접하여 대학본부와 제2공학관이 위치하므로 공사 중 철저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에 최우선이 될 수 있는 공사 및 공정관리를 최우선 조치를 하여야 한다.(낙하방지 조치,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한 주출입구 개설, 작업자 등이 안전한 비계 조치(시스템 비계) 설치 등)
- 21)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최우수등급), 건축물에너지 효율등급(1++)의 본 인증을 위해 각종 예비인증도서와 설계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한다.
- 22) 수급인은 해당공사와 다른 공종의 수급인과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되도록 상호 협력방안을 도출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련 공사의 접속부위 적합성, 시공한계, 순서, 시기, 속도, 준비 등을 모든 공사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하여 조정하여야 하며, 타 공종의 시공상세도를 취합, 통합하여 작성, 검토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 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 한 재시공, 수정, 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23) 야간공사는 안전사고, 품질확보 등에 불리하므로 시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 한다.
- 24) 동절기공사는 물 사용 공사 등 기온저하로 인하여 품질확보가 어려울 경우 공사

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 품질저하 및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는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되 이로 인한 잘못, 재시공 및 하자발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며, 이로 인한 추가비용은 청구 할 수 없다.

- 25) 제3자에게 하도급을 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도급 한 경우에도 수급인의 책임과 의무는 면제되지 않으며 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 26) 수급인은 공사예정공정표 작성 시 동절기 공사 중단, 주52시간 근로시간 준수, 레미콘 수급 등의 모든 조건을 감안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공사지연 시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7)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에 주변건물과 시설물의 안전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하되, 동일 자료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이상 지정된 장소에서 공사전경을 촬영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28) 수급인은 공사 착공 전 지상, 지하 지장물을 조사하여 기록하여야 하며, 이로인한 공사 수행 중 방해요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행하여야 한다.
- 29) 수급인은 표준시방서(또는 공사시방서) 각 시방 기준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30) 수급인은 시공측량 후 측량 성과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검측을 받아야 하며, 공사의 모든 부분에 대한 위치, 표고, 치수의 정확도에 대하여 책임을 가진다.
- 31) 수급인은 발주자가 설치한 측량말뚝을 이동 또는 손상시켜서는 안 되며, 만일 이동이 필요할 때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32)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33)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해양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 34)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 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불합격된 자재는 자체 없이 반출하여야 한다.
- 35) 수급인은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에 요구되는 품질 또는 성능을 실현하기 위해 설계서 및 시방서를 준수한다.

- 36) 모든 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고 KS 규격이 없는 제품은 감독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 시 시험하고 사용승인을 받는다.
- 37) 사용자재는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한다.
- 38) 시공상 필요하거나 감독관이 요구하는 부위의 공작도, 시공상세도 등은 지체 없이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준공 시 준공도면 작성에 반영 한다.
- 39) 수급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0)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등을 두고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 41) 기존 제1공학관을 철거하고 동일부지에 증축하는 사업이나 철거 시 지하의 안전을 고려하여 지하층 구조물 철거는 토공사의 흙막이 설치 후 및 터파기 작업과 병행하여 지하구조물 철거가 이루어지므로 상부 건설장비 운용으로 인하여 지하구조물 붕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부에 지지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 42) 가시설물(비계, 안전망, 보호막, 현수막 등)의 설치는 안전사고 예방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위 미관을 고려하여 바탕면이 양호한 자재(신자재)로 설치한다.(도안 및 문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할 것)
- 43) 공사장 안전관리는 관계법규에 의거 시행하되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 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할 것이며, 사고 미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하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 하에 수습하고 공사착공 후 지체 없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44) 공사차량으로 인한 공공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공공시설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착공하여야 한다.
- 45) 수급자는 공사시공으로 인한 학교 내, 외 등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환경 및 위생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 46) 공사 중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재료운반 차량의 덮

게 및 타이어 세척 등)나 오염저감대책 시설은 관계법규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47) 2019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20~'24)에 준수하며, 시공 시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48) 수급인은 대기환경보전법,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2005년 이전에 생산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와 2004년 이전에 생산된 지게차, 굴삭기 등은 본 공사의 사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49) 공사장 주변에 가시설, 토사, 자재 등을 무단으로 적치하여서는 아니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청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0) 수급인은 비산먼지발생 사업 신고서(공사시행 3일 전까지) 및 특정공사 사전 신고서(굴삭기 등 소음발생 장비사용 10일전까지) 등 행정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환경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 후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 공사착공 전 비산먼지 억제시설 및 방음, 방진시설 설치
- 토사적재 등 반.출입 차량은 덮개를 사용하고 가급적 출·퇴근 시에는 운행 억제
- 공사용 출입차량 세척대를 주진입도로 인근에 설치하여 세척 후 차량출입이 되도록 하여 도로로 토사유출이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타이어 세척 후 잔여 물 흐름의 방지시설 별도 조치
- 굴착공사 시 토사유출, 하수유출 등으로 인접지 피해가 없도록 피해방지시설 및 계측관리시설을 설치한다.
- 공사장 주변의 배수로를 점검하고 기능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전조치

51) 공사로 발생되는 폐자재 및 매립토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시 건축물폐자류 등 업무처리지침과 관계법규 등에 의거 처리한다.

52) 수급인은 시공 완료 후 시설물(목적물)을 인계하고자 할 때에는 제반하자 및 행정적인 절차의 마무리 등 각종 계약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전체 시설물에 대한 최종 인수 시까지의 모든 공공요금(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과 장비 시운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정당한 절차에 의거 결정한다.

53) 가설울타리는 설치와 해체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기 위해서 철거공사 시 설치한

가설울타리를 없애 인계받아 사용해야 하며, 공사 중 이전 또는 해체 후 복구는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일부 가설울타리 신설구간 있음)

54) 가설전기와 가설용수는 수급인의 부담으로 설치하되 인입부담금과 사용료는 추후 정산한다. 다만, 설치는 수급인 책임 하에 수행하고 소용되는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55) 폐기물처리 업무수행 지침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하여 보관, 처리하여야 하며, 별도로 선정되는 건설폐기물처리 업체와 협의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6) 당 공사는 전자인력관리제 대상사업이므로 이를 운영 할 시스템을 설치해야하며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과 연계하여 건설근로자의 출, 퇴근관리, 노임관리, 공사관리, 근로자 개인보호 지급관리, 근로자 건강관리 등에 사용한다.

57) 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연차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정당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수급인으로 하여금 ‘다’항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58) 본 사업은 서울시 환경정책과의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충분히 숙지하여 공사진행시 반영하여야 하며, 아울러 별도의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공사 추진하여야 합니다.

59)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상 원설계자의 디자인 의도 구현 등을 위해 시공사와 설계자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원설계자가 의견이 반영 되도록 시공추진해야 한다.

〈코로나 19〉관련 사항

우리대학교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국내 유입에 따른 추가적인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현장에 노동자 투입 전 매일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유무와 체온 확인을 실시하고,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을 비치하여 하여야 한다
- ☞ 노동자가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가래, 인후통 등)이 발생하면 지역 내 보건소, 선별진료소 등에 문의하여 겸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감염 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한다.